

배달용 치킨 원산지 표시 시행

## 식품점객업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

농림수산식품부

### 1. 일반적인 표시방법

가. 원산지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해야 하고, 그 밖에 풋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. 다만, 100제곱미터 미만의 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은 메뉴판·게시판 또는 풋말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 할 수 있다.

나.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기재된 음식명 글자크기의 1/2 이상으로 한다.

다. 집단급식소는 식당이나 취식(取食)장소에 월간 메뉴표, 메뉴판, 풋말 등을 사용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며,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보육시

설 등은 원산지가 기재된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으로 알려주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해야 한다.

라. 장례식장, 예식장, 병원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는 취식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풋말, 게시판 등으로 표시한다.

마. 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품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냉장고 전면에 일괄 표시할 수 있다.

바. 원산지가 같은 경우에는 메뉴판 및 게시판에 일괄 표시할 수 있다.

[예시]

우리 업소에서는 “국내산 쌀”만 사용합니다.

우리 업소에서는 “국내산 배추로 만든 배추김치”만 사용합니다.

우리 업소에서는 “국내산 한우 쇠고기”만 사용합니다.

우리 업소에서는 “덴마크산 돼지고기”만 사용합니다.

## 식품접객업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

### 2.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

축산물의 원산지는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고,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.

#### 가. 쇠고기

1) 국내산의 경우 “국내산”으로 표시하고, 식육의 종류를 한우, 젖소, 육우로 구분하여 표시한다. 다만,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“국내산”으로 표시하되, 괄호 안에 식육의 종류 및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.

[예시]

소갈비(국내산 한우), 등심(국내산 육우)  
소갈비 국내산(육우, 호주산)

2) 수입산의 경우에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.

[예시] 소갈비(미국산)

3) 원산지가 다른 쇠고기를 섞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표시한다.

[예시]

갈비탕(국내산 한우와 호주산을 섞음)  
국내산 한우 갈비뼈에 호주산 쇠고기를 접착(接着)한 경우 : 소갈비(호주산), 설렁

탕(육수 국내산 한우, 고기 호주산)

나. 돼지고기 · 닭고기 · 오리고기

1) 국내산의 경우 “국내산”으로 표시한다. 다만, 수입한 돼지를 국내에서 2개월 이상, 수입한 닭 또는 오리를 국내에서 1개월 이상 각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“국내산”으로 표시하되, 괄호 안에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.

[예시]

삼겹살 (국내산), 삼계탕(국내산), 훈제오리(국내산)

삼겹살 국내산(돼지, 덴마크산), 삼계탕 국내산(닭, 프랑스산), 훈제오리 국내산 (오리, 중국산)

2)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.

[예시]

삼겹살(덴마크산), 삼계탕(중국산), 훈제오리(중국산)

3) 원산지가 다른 돼지고기 또는 닭고기를 섞은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한다.

[예시]

고추장불고기(국내산과 미국산 돼지고기 를 섞음)

닭갈비(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), 오리불

배달용 치킨 원산지 표시 시행

## 식품점객업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

고기(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)

### 3. 배달음식의 원산지 표시방법

가. 닭고기 및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배달을 통해 판매·제공하는 경우 그 조리 음식에 사용된 닭고기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한다. 다만, 포장되지 않고 판매되는 경우에는 전단지, 스티커 등에 표시할 수 있다.

나. 가목에 따른 세부 원산지 표시는 시행규칙 제3조제4항 별표2 제2호에 따른다.

[예시]

찜닭(국내산), 양념치킨(브라질산)

### 4. 그 밖의 공통사항

가. 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, 오리고기를 섞은 경우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한다.

[예시]

햄버그스테이크(쇠고기 : 국내산 한우, 돼지고기 : 덴마크산)

나. 국내산 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, 오리고기, 쌀 또는 배추를 사용한 경우에는 “국

내산”으로 표시하는 대신에 이를 생산한 시·도명이나 시·군·구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.

다. 닭고기 조리음식 외 배달하는 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생략할 수 있으나, 배달 음식을 조리한 업소 내에는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.

라. 쇠고기·돼지고기·닭고기·오리고기 식육가공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다. 다만, 식육가공품 완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 그 포장재에 기재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.

[예시]

햄버거(쇠고기 : 국내산), 햄버거(쇠고기 : 호주산), 양념불고기(쇠고기 : 수입산) 